

의안
번호

431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3. 19

전문위원 강 영 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오중균 의원 외 17명

나. 의안번호 : 제431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02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5. 03. 13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(안 제2조, 제30조제2호)

- “6세 미만” ⇒ “7세 이하”
- “보육교사” ⇒ “보육교직원”

나.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비용 보조 신설(안 제30조제10호)

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5. 3. 6. ~ 2025. 3. 12.
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 영유아의 나이를 6세미만에서 7세이하로 규정하여 실제 보육서비스 적용 대상 나이로 일치시키고,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.

< 성북구 어린이집 시설 현황 >

(2025. 3. 1.현재)

구분	계	국공립	민간	가정
시설수	178	91	48	39
보육교직원수	1,805	1,018	528	259

< 성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>

(2025. 3. 1.현재)

계	원장	보육교사	특수교사	영양사	간호사	조리원	치료사	기타
1,805	178	1,347	2	3	2	128	1	144

□ 주요내용

가. 안 제2조(정의) 정비

- 2023. 8. 8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(정의)1) 개정·시행에 따라, ‘영유아’의 정의를

- 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 12. 19., 2011. 6. 7., 2023. 8. 8., 2024. 2. 6.>
1. “영유아”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육”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어린이집”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‘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’에서 ‘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’으로 개정하여 실제 정책 및 교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를 일치시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‘어린이집’ 정의를 법령상 개정(‘24. 2. 6개정, ’24. 8. 7시행)사항 으로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.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영유아”란 <u>6세 미만</u> 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	1. ----- <u>7세 이하</u> -----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“어린이집”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	3. “어린이집”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	4. ----- 친권자·후견인, ----- -----.

나. 안 제30조(비용의 보조 등) 정비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6조1)(비용의 보조 등)개정(‘24. 2.13개정, ’24.8.14시행)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

* ‘보육교직원’이란 어린이집 원장,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을 포괄함

- 비용의 보조대상을 현행 보육교사 인건비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정비하였고,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, 보육교직원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건비, 초과보육(超過保育)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,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,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 <개정 2011. 6. 7., 2011. 8. 4., 2013. 6. 4., 2015. 5. 18., 2024. 2. 13.>

제10호를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.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30조(비용의 보조 등)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제30조(비용의 보조 등) ----- -----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보육교사</u> 인건비	2. <u>보육교직원</u> --
3. ~ 9. (생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10.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비용</u>
10. (생략)	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4. “보호자”란 <u>친권자·후견인</u>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	4. ----- <u>친권자·후견인</u> , ----- ----- ---

다. 그밖에 안 제3조(위원회의 설치), 안 제4조(위원회의 구성), 안 제13조(위탁운영) 등 정비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,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함.

□ 종합의견

-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보육정책 및 보육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구체적으로 정비하였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,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사항으로 개정의 취지나 내용이 적절하고 특별한 위배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.